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

(양민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511

발의연월일: 2020. 5. 25.

발 의 자 : 양민규 의원(1명)

찬 성 자: 조상호, 최기찬, 홍성룡,

이광호, 최웅식, 김화숙,

송명화, 김정환, 이광성,

황인구, 정지권, 경만선,

송재혁, 이상훈, 김제리,

한기영, 장인홍, 박순규,

권순선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자체가 시민에게 공공자원을 무상대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 소유 공용차 량을 서울시민과 공유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 ~ 제2조).
- 나. 공용차량 이용대상자의 범위 및 이용신청방법, 준수사항 등을 정함 (안 제3조, 제5조, 제12조).
- 다. 공용차량의 이용신청, 승인 및 통지 절차와 운전자의 자격을 정함(안 제6조, 제10조).
- 라. 이용자의 준수사항, 위반 시 조치 사항 및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해 정함 (안 제13조, 제14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

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5조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을 서울시민과 공유하여 이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을 증진 시키고 유휴 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 정책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공용차량" 이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.
- 2. "공용차량 공유사업"이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(이하 "공휴일등"이라 한다)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서울시민(이하 "시민"이라 한다)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3. "이용대상자" 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3조에 따른 시민을 말한다.
- 4. "이용자" 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 의 승인을 얻어 공휴일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- 5. "운전자" 란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이용자를 위하여 이용자가 지정하여 공용차량을 운전하도록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이용대상자의 범위)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시인 사람으로서 다음

-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- 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
- 3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
- 4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- 5.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현재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
- 6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- 제4조(이용자의 공용차량 이용의 범위) 시장은 공휴일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 용하게 할 수 있다.
- 제5조(이용신청 방법)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시장에게 서면, 인터넷 또는 어플리케이션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, 제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방문 또는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 - 1. 이용대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(다만,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 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.)
 - 2. 이용자 또는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
 -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의 15일(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)전부터 1일(그날 오후 1시까지를 말한다)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.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신청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이용신청의 기간을 서울특별시청 게시판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- 제6조(이용의 승인 등) ① 시장은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. 다만,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은 같은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운전면허 정보
 - 2.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 - ② 시장은 이용신청 등을 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 수의 범위에서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, 탑승인원 및 목적지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대상자에 대하여 그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 후에도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신청 등을 한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.
 - 1. 최근 1개월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자
 - 2. 기초생활수급자
 - 3. 차상위 계층
 - ③ 시장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신청을 한 자에게 이용승인 여부(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)를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④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(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1명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같이 생활하는 다른 가족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)에 대하여 월 2회(공휴일등이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 최대 5일

- 까지를 1회로 본다)의 범위에서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이용 가능한 공용차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월 2회 이상 이용한 사람의 추가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.
- ⑤ 이용대상자는 이용신청 등이 있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신청 등의 기간 내에 이용신청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⑥ 시장은 이용승인 후 부득이한 사유로 공용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.
- 제7조(개인정보의 수집) ① 시장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에 따라 공용 차량 공유이용을 위하여 신청자·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.
 -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. 다만,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.
- 제8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시장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·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,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- 제9조(개인정보의 제공)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·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주민부서, 경찰청 및 복지부서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수 있다.
 -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. 다만, 이로 인한 불이익

- 은 거부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.
- 제10조(이용자 및 운전자의 자격)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 또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
 - 1.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
 - 2.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사람이 아닐 것
 - 3.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일 것
 - 4. 이용하려는 날 현재 만 26세 이상인 사람일 것
 - 5. 최근 2년간 교통사고로 중상 이상의 인적 피해 이력이 없고 음주운전 법 규위반 이력이 없는 사람일 것.
 -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 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 용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제11조(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) ① 공용차량의 출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
 - 1.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
 - 2. 이용자의 준수사항 고지
 - 3. 차량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
 - 4. 차량 출고
 - ② 공용차량의 입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
 - 1.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
 - 2.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
 - 3. 차량 입고
 - ③ 무인화장치를 활용한 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는 시장이 달리 정할수 있다.
 - ④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3호

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·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이용자의 준수사항)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,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.
- 2. 운전을 하는 이용자나 운전자는 제10조에 따른 이용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,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자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. 이용자는 이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을 위한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4.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5.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, 통행료, 과태료, 범칙금 등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6.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,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7.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 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,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8. 이용자는 「교통안전법」 및 「도로교통법」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9. 이용자 및 운전자는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10.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한 경우 향후 일정에 대한 부

담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.

- 제13조(이용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조치) ① 시장은 이용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.
 - 1. 제1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거나, 영리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: 5년 이하의 이용 정지
 - 2.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: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. 다만, 「교통사고처리 특례법」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한다.
 - 3. 제6조제5항에 따른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, 같은 항에 따른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: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
 - 4. 제12조에 따른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: 6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
 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체적인 조치 사항과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이의신청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등에 대하여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정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- 1. 제5조에 따른 이용신청 등에 대한 불승인
 - 2.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
 - 3. 제13조에 따른 이용 정지
 -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

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 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(공용차량 공유사업 지원) 시장은 공용차량 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공용차량 이용 신청서(이용자·운전자작성)

					이용자 지	1격명				
이용	성	명			주민등록	번호				
대상자	연	락 처			주	소				
성 명				생년월일	/성별					
운전자1 대리 구		구분			운전면허	번호				
	면허 유효기간 연락처									
성 명		명			생년월일	/성별				
운전자2	대칭	구분			운전면허	번호				
	면허	유효기간			연 락	처				
	01	용기간	년	월	일 ~	년	월	일 까	· 지	
	희	망차량			차량수	;령	월	일	八	ЙI
 내 용	행	선 지			차량반	납	월	월 일 시 눈		ЙI
41 0	01	용목적								
	탑	승인원		명	특이사	항				
	차량수	≒령장소 :	서울특별시가	- 지정	하는 수령	장소				

「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」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의 이용을 신청합니다.

<준수사항>

- 1. 공용차량은 만 26세 이상 보험가입 차량으로, 이용하려는 날 현재 만 26세 이상만 운전가능
- 2. 운행 중 발생하는 주유비, 통행료, 과태료, 범칙금 등은 이용자 부담
- 3. 공용차량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승인자 외 이용(대여) ㆍ운전금지
- 4.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및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 배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용자 부담
- 5. 운전면허 정지·취소 등 사유를 서울시에 은폐하고 운전 시,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이용자 부담
- 6. 이용 중 차량 고장 및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, 차후 일정과 그에 따른 경비 부담은 이용자 책임으로 한다.

<첨부서류>

- 1. 이용대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(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)
- 2. 이용대상자 또는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

년 월 일

신청자: (서 명)

서울특별시장 귀하

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내역

항 목	수집:이용 목적	보유기간
성명, 주소, 연락처, 생년월일, 성별, 행선지, 이용자격, 이용목적	공용차량 공유 이용, 통계목적 활용	3년
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□ 동의함 □ 동의안함

□ 고유식별정보 수집 · 이용 내역

항목	수집·이용 목적	보유기간
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번호	이용자 및 운전자 자격 조회	3년

- ※ 주민등록번호는「전자정부법 시행령」제90조제4항에 근거하여 수집됩니다.
- ※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·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☞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□ 동의함 □ 동의안함

□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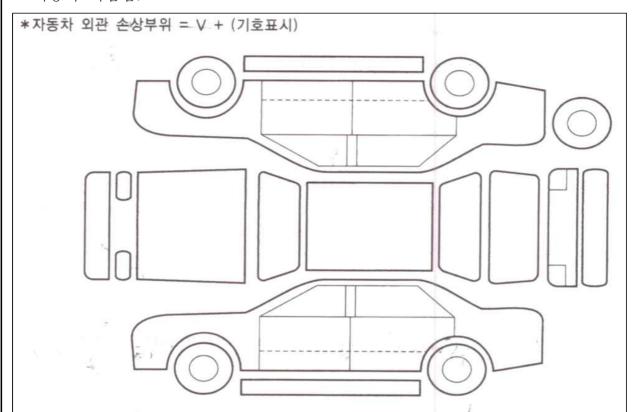
제공 기관	제공 항목	제공 목적	이용기간
서울시 각 자치구 보건복지부, 여성가족부, 법무부, 통일부	성명, 주민등록번호	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이용자 자격 확인	3년
경찰청	성명, 운전면허번호	운전면허 종별 및 교통사고, 법규위반 여부 확인	3년

-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, 증빙서류를 방문 제출해야 합니다.
- ☞ 서울특별시가 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핵정정보인 공동이용을 통하여 「서울특별시

공용차량 공유	이용에 관한	-					동의하십니까?	
							□ 동의함	□ 동의안함
			년	월		일		
		신청자 :			(서	명)		
		운전자 :			(서	명)		

공용차량 점검 확인서

- ※ 유류게이지 및 차량 내·외부 상태 상호확인 하였음.
- ※ 공용차량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차량 운행 중 이상이 있을 시 이용자 책임임.



	수 령 확 인 서				반 납 확 인 서	
차량번호			차량반	호		
일 시			일	Л		
수 령 자	Ж	명 / 인	반 납	자		서명 / 인
생년윌일			생년윌	일		
확 인 자	Мã	명 / 인	확 인	자		서명 / 인

서울특별시 총무과 별관운영팀

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[별지 제3호서식]

	공용차량 운행일지				이용	-자	담당자		팀장		곀
	년	월 일	j (7	요일)							결 재
차량번호		전일누계			km	n	전날 남 양	.은			L
		7410-7			,	류 수	금일 급	유량			L
이 용 자) 금일운행			km	불 현	금일 소리	비량			L
운 전 자	(a – –) 누 계			km	황	금일 남	은			L
승 차 자	용 무	경유지 및	목적지		시 출발	간 	도착	운경	행거리	운행 (서	확인 명)
					:		:		km		
_	에 건의사항〉										
〈이용자	확인사항〉										
○ 운행	전후 차량의 기	능상태 및 외	부 파손	여부	- 🗆	유		무			
○ 운행	전 하이패스 및	네비게이션	작동 여브	1		유		무			
○ 운행	후 실내청소 및	정리정돈				유		구			
○ 운행	전 블랙박스 작	동 여부				유		7			
○ 차량	및 장비 이상 빌	날생 시 차량기	시원담당여	세 통	보						
1. 어떤 2. 피해지 3. 인적 4. 보험호	·고 발생 시 대체 사고라도 일단 기 사가 있는 경우 1 피해가 발생한 기 기사 사고접수(○ 대용 보고: ☎ ○	정차하고(미 반드시 구호3 경우 반드시)○○보험사,	즈치(2차 경찰서에 ☎ ○○(사고! 신고)()-	발생 방 1	지 조	치, 가급적				

■ 서울특별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[별지 제4호서식]

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				구 시	이용자	담당자	팀장	
		년	월	일	확 인			
		본 인				상	대 방	
	차량번호				차량번	<u>⊽</u>		
운 전	운 전 자 성 명				운 전 : 성	자명		
자 관	생년월일				생년월'	일		
련	주 소				주 ;	소		
사 항	연 락 처				연 락 :	처		
	보 험 회 사 명				보 회 사	헌 명		
	사 고 접수번호				사 접수번.	고 호		
	사고일시					사고치	-량 사진	
	사고장소							
사 고	사고내용							
관 련	사 고 피해내용							
사 항	조치사항							
O	차 량 수리공장							
	기타사항							

확 인 자 : (서명)